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1명	광화문광장 사업과	◦ 광화문광장 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원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 경력이 없는 자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고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3. 가산특전 : 사회형평가점 적용(서류전형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 항목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므로 **당해 채용은 미적용**
 - ※ 사회형평가점의 경우 대상 여부 응시자 본인이 증빙자료 제출시 적용
 - ※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어 사회형평가점 미적용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3.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4.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로시간제 적용)
 - ※ 광화문광장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4,776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별지 5)**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023.10.27.(금)~11.7(화)	서울시 홈페이지	10일	초일 불산입
원서접수	2023.11.08.(수)~11.10.(금) (09:00~18:0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광화문광장사업과	3일	중식시간 (12시~13시)제외
1차합격자 발표	2023.11.16.(목)	서울시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23.11.21.(화)	서울시청 신청사 20층	1일	변경시 별도공지
결격사유 조회	2023.11.22.(화)	-	1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28.(목)	서울시 홈페이지	1일	
신규 채용	2024.01.01.(월)	광화문광장사업과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1.08.(월) ~11.10.(금)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서소문 제2청사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서소문 제2청사 9층
광화문광장사업과 광장관리팀 공무원 채용 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제출
- 경력인정범위 : 채용 관련분야 해당 경력만 인정
- 합격자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 평가 배점 : 10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순)

심사항목		심사점수(점)
분야	평정요소	
일반	자기소개서 - 소통·화합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 및 책임감	60
경력	경력기간	20
부양가족	부양가족수	20
가점	사회 형평	3
소계		100+가점(3)

경력(20점)		부양가족 수(20점)	
경력 기간	배점	인원	배점
7년 이상	20점	5명 이상	20점
5년 이상 ~ 7년 미만	18점	4명	18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6점	3명	16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4점	2명	14점
1년 미만	12점	1명	12점
경력 없음	10점	없음	10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총 5개 항목, 50점 만점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합계가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건강검진 결과 등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1,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사회형평가점 적용서류(증빙서류 직접 제출시에만 적용)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3.11.10.(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화문광장사업과 담당 김지광 사무관(☎ 02-2133-7742)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별지2] 이력서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공무직(시설청소원)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서명)</p>				

[별지5] 공무원 급여

2022년 서울시 공무원 급여표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단위 : 원)

호봉	월급여 총액 (1/12 매월지급)	월급여액	명절휴가비 (설·추석 50%지급)	지급총액
1	24,776,400	2,064,700	2,064,700	26,841,100
2	25,196,400	2,099,700	2,099,700	27,296,100
3	25,616,400	2,134,700	2,134,700	27,751,100
4	26,036,400	2,169,700	2,169,700	28,206,100
5	26,456,400	2,204,700	2,204,700	28,661,100
6	26,876,400	2,239,700	2,239,700	29,116,100
7	27,296,400	2,274,700	2,274,700	29,571,100
8	27,716,400	2,309,700	2,309,700	30,026,100
9	28,136,400	2,344,700	2,344,700	30,481,100
10	28,556,400	2,379,700	2,379,700	30,936,100
11	28,976,400	2,414,700	2,414,700	31,391,100
12	29,396,400	2,449,700	2,449,700	31,846,100
13	29,816,400	2,484,700	2,484,700	32,301,100
14	30,236,400	2,519,700	2,519,700	32,756,100
15	30,656,400	2,554,700	2,554,700	33,211,100
16	31,076,400	2,589,700	2,589,700	33,666,100
17	31,496,400	2,624,700	2,624,700	34,121,100
18	31,916,400	2,659,700	2,659,700	34,576,100
19	32,336,400	2,694,700	2,694,700	35,031,100
20	32,756,400	2,729,700	2,729,700	35,486,100

※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운전, 주차관리) 고령자 적합업무로 만50세 이상 채용